

「2024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청년기본법」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3조 등에 따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
 - ※ 특정 요건 충족 시 5인 이상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 * 5인 이상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선 신청 필요(붙임 자료 참조)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액 (지원기간)
생애 첫 일자리	1.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나 주력 육성산업 업종에 속한 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미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2. 월 급여: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 2024년 최저임금: 2,060,740원	월 50만원 (1년)
추가고용 (5인 미만 기업)	1. 5인 미만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고용(채용)한 기업 2. 월 급여: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2023년도 연평균피보험자 수 기준 대비 추가채용 * (연)평균피보험자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개월수로 나눈 피보험자로, 소수점 이하 버림 * 2024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월 70만원 (1년)
더 나은 일자리	월 급여를 최저임금의 120%이상으로 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월 급여 247만원 이상	월 60만원 (1년, 최대2년)

2. 사업 참여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4년 7월, 8월, 9월, 10월 11일 ~ 20일(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본관 3층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
- 구비서류: 운영 지침에 의함(별도 첨부파일 참조)

4. 참여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자격조회 및 서류 심사 후 참여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함

5. (사업 선정자)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 신청접수: 2024년 분기별(3, 6, 9, 12월) 1일 ~ 10일
 - 신청방법: 온라인(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 또는 이메일(cloud429@korea.kr)
 - 접수 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본관 3층)
-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한 달 익월이내에 지급

6. 기타사항

- 참여 신청서의 모든 제출 서류는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 별도 첨부파일 확인

7. 문 의 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064-710-37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비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①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② 4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신규 고용한 경우 참여 가능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과의 비교

구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비고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대상	만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6인 기업: 최대 5명 17인 이상 기업: 상시근로자 현원의 30% (최대 10명) 												
지원요건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유지 월 60만원 / 최대 1년간 * 2년 근속시 480만원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기준</th> <th>지원금</th> <th>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생애 첫 일자리 지원</td> <td>50만원</td> <td rowspan="2">1년</td> </tr> <tr> <td>추가고용 지원(5인미만)</td> <td>70만원</td> </tr> <tr> <td>더 나은 일자리 지원 (최저임금의 120%)</td> <td>60만원</td> <td>최대 2년</td> </tr> </tbody> </table>	지원기준	지원금	기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50만원	1년	추가고용 지원(5인미만)	70만원	더 나은 일자리 지원 (최저임금의 120%)	60만원	최대 2년	
지원기준	지원금	기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50만원	1년												
추가고용 지원(5인미만)	70만원													
더 나은 일자리 지원 (최저임금의 120%)	60만원	최대 2년												
지원절차	사업참여 신청	수시(온라인 접수) ※ 채용일 3개월 이내 신청	매분기 11일~20일 ※ 채용일 6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에 의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지급결정,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	매분기별(3/6/9/12월) 지원금 신청에 의해 지급											
특이사항	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종료후 2개월 이내에 1회차 장려금 신청	사업참여 선정 이후 분기별 지원금 신청												
사업신청 필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중소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선 신청 필수 ○ 다만, 5인 이상 중소기업이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업상태가 6개월 미만인 청년 신규 채용 2. 만 35세~만 39세 청년 신규채용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후 반려 된 경우(신청기간내 미신청으로 반려된 경우 제외) 													